

#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

### 1. 심 사 경 과

1992. 11. 6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 교육감

문교사회위원회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2년 10월 30일

○ 회부일자 : 1992년 10월 30일

다. 상정일자 : 제 84회 임시회

○ 제 1차 문교사회위원회 (1992. 11. 6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 제안설명자 관리국장 김 근 학 )

가. 제 안 이 유

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(법률 제4473호: '91. 12. 31)의 개정  
따라 "의사담당관"을 "의사국장"으로 변경하고자 함.

나. 주 요 골 자

용어의 정의중 본청의 "의사담당관"을 "의사국장" 으로 변경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 전문위원 김 영 만 )

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2조(의사국의 설치 등)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정비를 위하여 "의사담당관"을 "의사국장" 으로 개정하고,
- 부칙의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 조례 중에서 "의사 담당관"을 "의사국장"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직위조정에 따른 기타 관련 조례의 효율적인 개정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  
( ※ 「법제처」법령입안 심사기준 P22참조 )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" 없 음 "

5. 토 론 요 지 : " 없 음 "

6. 심 사 결 과 : " 원 안 가 결 "

7. 소수 의견 요지 : " 없 음 "

8.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

가. 개정 조례안

나. 신.문 대비표. 끝.